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66
----------	-----

2023년 9월 1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7월 27일, 정지웅 의원 등 74명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웅 의원)

1. 제안이유

○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경향으로, 교사들은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 지도와 훈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음.

-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 주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원’, ‘교원에 대한 예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 바.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자.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방안을 규정함(안 제14조)
- 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5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7월 27일 정지웅 의원 등 74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966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권 확립을 통한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장을 지원하고, 학생과 보호자 등 교육 주체의 신뢰와 협력 아래 교원의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7월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는 사건과¹⁾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도 교원이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사례²⁾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학생의 수업 방해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시행하고,³⁾ 23일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정당한 교육

1) 배동주 기자(2023.8.4.), “초6 학생에게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3190만원 손배 소송”,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8/04/RFR6A7WWD5AHXCMQFE74GYBV2A/ (검색일 2023.8.30.)

2)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되듯이 충청남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수년 전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자루를 사용해 30대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등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급되고 있음.
(자료 : 전연남 기자(2023.3.23.), “[뉴블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SBS>, 편성일 2023.3.23.)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3-337호)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3-338호)

활동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서도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무고성 민원·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⁴⁾
- 동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교권 침해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각각 목적과 정의,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교육감 등의 책무, 제5조에서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6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제13조에서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제14조에서 보호자·민원인에

4) 2023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국회에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등 11명 발의, 2023.8.24. 발의)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재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5명 발의, 2023.6.1. 발의),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보호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2명, 2023.8.7. 발의)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1명 발의, 2023.8.10. 발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검사 역시 그 의견을 참고하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5명, 2023.7.27. 발의) 등이 발의되어 있음.

의한 민원의 통합관리, 제15조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제16조에서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규정하는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전반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와 제9조, 제10조 등에서 ‘학교장’과 ‘학교의 장’, ‘학교’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등 일부 용어나 약어를 혼용하거나 약어(보호자)에 대한 정의에 앞서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함께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폐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명칭 및 기능 개편,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 보호자 의무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⁵⁾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 향후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안 제7조, 교원치유지원 센터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는 안 제12조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교권 보호 4대 임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2023년 9월 1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2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3.09.01.)

특히, 교육감에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교원의 피해 치유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을 위임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를 집행하는 교육감과⁶⁾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에게⁷⁾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문에 대하여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활동 보호 환경의 조성 등은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할 책임이나 임무라기보다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본칙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는 교육활동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서 강구되어야 할 일반적 조치로서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로서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6)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4~8. 삭제

7)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 학생과 보호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원지위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이 학교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⁸⁾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교육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적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⁹⁾ 교육활동은 학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활동과 수학여행,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의 참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감안할 때 교원 등의 생활지도권 보장은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의 재기재를 통해 사안에 대한 교직원과 보호자 등의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 6쪽.

4)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안 제14조)

- 안 제14조 제1항은 학교장이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가 학생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 알리는 데 있어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교육감이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에서도 다수 보도된 바와 같이¹⁰⁾ 일부 보호자 등의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조문은 민원이나 출결 관리 등의 통합관리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교육활동 보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2023년 9월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간 합의로 학교장을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¹¹⁾ 개정 예정 법률과의 체계적整合성, 해당 법률개정안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조문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10)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 등을 주장했다는 사안(세계일보, 2023.8.11.)이나 학부모가 한 공립 유치원 교사에게 자신의 학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고 협박을 했다는 사례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연이어 언급되면서 일부 보호자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김현주 기자(2023.8.11.), “교육부 5급사무관,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 직위해제 논란”,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1501905?OutUrl=naver>; 김송이 기자(2023.8.2.), “‘나 카이스트… 당신 어디까지 배웠느냐’ 유치원 교사, 학부모 녹취 공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28979> [검색일 2023.8.30.] 등)

11)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2023년 9월 1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2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3.09.01.)

- 한편, 동 조문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제2항에서 제시된 법령 위반의 범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정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4항의 “통신수단 지급”을 “통신환경 구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2항에서 제시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수사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사안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사항에 불과한바, 별도의 수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해 교원에게 적절한 통신수단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는 사업 집행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호자와 학교 환경에 적합한 업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4항의 ‘통신수단’을 ‘통신환경’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견(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3조와¹²⁾ 「초·중등교육법」 제22조¹³⁾ 등에 따라 조례에서 정의되는 교원 이외에 강사와 명예 교사,

12)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육활동의 운영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에는 강사와 명예 교사, 기간제 교사가, 초·중등학교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 외에 학교 급식이나 도서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나 사서 직원이 식생활 지도와 독서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이나 보호자 등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통학로에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이처럼 교원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라는 조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의 대상으로 학생 교육이나 학교 행정에 참여하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규정하고 있음을¹⁴⁾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참여자의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범위를 강사까지 확대하는 경우, 소속이 서울시교육청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직업과 병행을 할 수 있어 그 피해가 교육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2023년 기준 공립 유치원 담임교사의 15.7%에 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과¹⁵⁾ 「2022년 서울교육통계」 기준 2,141명에 달하는 시간강사¹⁶⁾ 등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전개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처리 시 피해 교원의 사실확인서와 피해 증거 제출, 피해 사안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사가 병행되어 이뤄지고 있고,¹⁷⁾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보호 및 구제조치 역시 이에 준하여 사안 조사가 선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겸직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다소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6) 집행기관(서울시교육청) 의견에 관한 검토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례에¹⁸⁾ 따라 「교원지위법」과 관련하여 규정된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국가사무에 해당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8.22.).¹⁹⁾

15)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863), ‘담임교사 처우 개선 관련 자료’(제출일 2023.04.13.)를 분석, 정리한 것임.

16) 서울시교육청(2022.10.), 「2022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39쪽.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23)에 따르면,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에 사안 처리 절차는 ① 사안 발생 초기 대응 → ②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④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⑤ 사후처리 순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는 당사자 간 분리조치와 의료기관 치료 등의 긴급조치가 완료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사실확인서 및 피해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18)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19)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행정관련담당관-12681, 2023.8.22.)

○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에게 안 제7조부터 제12조의 자치입법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입법·법률고문 모두 「교원지위법」 제14조 등이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성이 높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동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표-1]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의견

입법법률고문 (주요 의견)	사유
A (제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지위법」 제2조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의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안 제7조부터 제12조의 사항은 상위법령인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음. 조례안의 내용이 교원의 지위 자체를 창설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B (제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명에 "교원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응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교원지위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와資金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적극적 대응으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C (제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법령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을지라도 법령의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 사안은 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속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2022년 10월 1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정의 규정에 교육활동의 정의를 추가하고, 교육 활동 보장의 기본원칙에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대책이나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비 지원과 교원의 회복력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동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 제2조에 교육활동의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인 「교원지위법」이 별도로 교육활동을 정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별도의 조작적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정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에 “학교의 교육 환경은 교원의 전문적인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교육청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의 조성 역시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어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방문 희망자의 출입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에 침입하여 교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소란행위를 일으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시설은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²⁰⁾ 별도로 출입 허가와 관련한 사항까지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의 이용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바, 동 조례안에서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를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이나²¹⁾ 「교육기본법」에²²⁾ 따라 보장되는 보호자, 지역 주민 등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권리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필요시 상담이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의견 역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에²³⁾ 관련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재기재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20)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1) 「국회법」 제11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과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은 모두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국회사무처(2021), 「국회법 해설」).

「지방자치법」 역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광의의 의미에서 행정감시권은 행정사무감사·조사권과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출석·답변 요구권 등 민주정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모든 권한을 포괄함. (서울시의회(202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435쪽.)

22)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조언)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비 지원 및 교원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7) 입법예고 의견에 관한 검토

- 2023년 8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총 36건으로, 모두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반대 의견의 주요 사유는 최근 제기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보다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 조례안의 내용이 학부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원이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표-2] 입법예고 제출의견의 세부 내용

입법예고 제출의견 세부 내용
학부모모독, 명예훼손등 법률적 강제조치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서로가 고발로 이어지는 교권 강화가 아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학교가 회복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의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망나니짓은 마땅히 비난받고 죄를 받고 반드시 시정되어야하지만 이런식으로 학부모 모욕, 명예훼손 등 법률조치 강제 조항을 넣어 법적으로 학부모권이 원천 봉쇄되면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고도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하는 병어리 학부모가 됩니다. 교육공동체의 주요일원이자 자녀 양육권을 책임지는 학부모를 완전 배제시키는 곳에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들은 점점더 적어질겁니다.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어주길바랍니다. 학생과 교사 중 학생인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폐해만 가득했던게 학생인권조례인데, 그전철을 또 밟는거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이런식으로 대립관계로 곧바로 이어지게 만드는 조례가 아닌, 대화의 창구를 먼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후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도 늦지않을것입니다. 이 조례안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세부 내용

교육공동체를 망친 가장 큰 주범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한 상태에서, 학부모 모욕, 명예훼손 등 법률조치 강제 조항 있는 조례를 만들면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주요 일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더 극심하게 싸우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조화롭게 교육공동체를 이룰 조례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야합니다. 이런 조례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우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여주십시오.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갈라놓고, 학부모를 고발하게 하면 좋습니까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고발하게 하는것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 명예훼손 우려 법안 반대합니다.

이제까지 공교육의 문제점과 교권이 무너졌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안타까운 교사의 절명이 내 자식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세대를 이어가야할 또 다른 자식들이 있기에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 하자고 외쳤건만! 정치권에서 어부지리로 ? 고온 조례가 이제는 교육의 3주체를 다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른 가치관을 심어 줄수 없는 강제입니다.

이슈만 있으면 조례나 법으로만 문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지양 하셨으면 합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어느 주체가 망치고 있는지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엄밀히 하자면 교육 주체의 우선권리는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노심초사하며 애지중지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학부모입니다. 나라에서 무상교육이라고 교육이 무상입니까? 세금입니다. 학부모가 요구한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기하고 쓸데없는 졸속 조례 만들지 마라!!!!

오래 걸려도 제대로 만들던지 아예 암것도 하지 말아라!!!!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서 교육을 봉괴시켰으면 좌파교육감들은 사죄하고 사퇴하심이 마땅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세요 학생에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칼을 쥐어줬기 때문에 학생이 휘두른 칼로 부모와 교사가 다쳤습니다 이제 교사에게도 칼을 쥐어주면 그 칼로 학생과 학부모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칼 자체를 뺏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분란 만들지 마세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육 봉괴 해결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투성이의 조례를 뜯어 고치는 것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성적지향 등 심각한 문제를 교권보호라는 위장으로 가리려 들면 안 됩니다. 학부모의 양육권도 존중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되며 학생도 존중받기 위해 조화롭고 균형있는 교육활동보호가 초점이 되어야합니다.

IV .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 토론요지 : 없음.

VI . 수정안의 요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학교 교육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교육감에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보호자, 학생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을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보호자가 학생의 출결 상태 등을 교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교육감이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도록 수정함(안 제13조)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에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 교원의 심리적 피해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66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12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보호자와 같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조례가 실질적 근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학교 교육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교육감에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보호자, 학생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 다.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건을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보호자가 학생의 출결 상태 등을 교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교육감이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도록 수정함(안 제13조)
- 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에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 교원의 심리적 피해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장은”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1항 중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을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해당 학교의 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제3호마목,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를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기된 보호자의 민원이 모욕,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필요할”을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수단을 지급”을 “통신환경을 조성”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략)</p> <p><u><신설></u></p> <p>② 학교의 <u>장은</u>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p>	<p>제2조(정의)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p> <p>5. (원안 제4호와 같음)</p> <p>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u>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u></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원안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 <u>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u></p>

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

-----.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

-----.

<삭 제>

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
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
을 유지하여 교원의 사생활을 보
호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
치) ① ~ ⑥ (생략)
⑦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
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
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

----- 학교-----

-----.

-----.

1. ~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
치) ① ~ ⑥ (원안과 같음)

⑦ -----

----- 보호자-----

-----.

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 · 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제8조 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 략)

-----.

1. · 2. (원안과 같음)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 · 은폐 금지 등) ① -----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

② ----- 제7조제5항-----

학교장-----

-----.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

-----.

1. · 2. (원안과 같음)

3. -----

가. ~ 라. (원안과 같음)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① (생 략)
② 제기된 보호자의 민원이 모욕,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마. ----- 학교장-----

② 학교장-----

-----.

③ 학교장-----

보호자-----
-----.

④ (원안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원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3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수단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통
신환경을 조성-----.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

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을 예우하며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에 대한 예우”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초기 대응(이하 “초기대응”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리 지정된 업무 담당자가 인지 즉시 현장 개입
2.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3. 목격학생과 현장 안정화
4.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5. 관련자가 학생일 경우, 보호자에 연락
6. 그 밖에 교육감이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④ 제2항에 따라 초기대응을 한 학교장은 자체 없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사항이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 · 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등에 대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